■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3. 12. 11. ~ 12. 18.

건축종별	[ ]신축, [○]증축,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지번 : 92-2번지	관련지번 : 명촌동 25-3번지 43필지	
	대지면적 : 806,608㎡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629.08㎡	건폐율 : 0.077%	층수 지하 : 층 / 지상 : 1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세대 / 1동
	최고높이 : 8.9m	용적률 : 0.077%	연면적 : 629.08㎡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종합의견	1. 캐노피가 가설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신축되는 캐노피의 규모와 존치기간을 생각했을 때 구조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합니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오타가 많으므로 재작성 바람 - KBC2009 기준의 지역계수 S는 KDS 2019 기준에서 지진구역계수 Z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문구 수정바람 - 울산 지진구역계수 Z와 위험도계수 I를 곱한 유효지반가속도가 0.22에 해당하고 국가지진위험도에서의 유효지반가속도는 0.18에 해당함. 이에, 현재 울산 지역 내 내진설계는 유효지반가속도 값을 0.20 이상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구조물의 고유치 분석에 따른 진동모드가 누락되어 있음. 기본 진동모드 중 비틀림모드가 1차 모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6개의 기둥 단면크기는 300×300×10×15이고 높이는 6m를 넘는 매우 세장한 기둥임. 장스팬 구간의 길이는 약 20m에 해당하여 층 전체의 비틀림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횡변위 발생 시 기둥의 2차효과(P-△ 효과)에 의한 모멘트 증폭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둥 및 골조에 대한 안정성(stability) 검토 바람 - 누락된 부재 설계 및 접합부 설계 검토결과 포함 바람 2. 풍하중 및 적설하중 등 설계하중은 현행기준을 적용할 것 (KDS 41 12 00) - 지상적설하중 2)항에 의거 1.0KN/㎡ - 설계풍하중 5.5.2 38m/s (36m/s 적용되어 있음) - 주골조용 활하중 저감 3.6.1에 의거 (0.6≤Lr) 0.6KN/㎡ 이상 (0.5KN/㎡ 적용되어 있음) - 중도리(purlin)설계시 활하중 1.0KN/㎡ 적용하고 현행설계코드로 검토할 것(0.5KN/㎡ 적용되어 있음)

		3. 골조의 사용성을 검토할 것 - 풍하중에 대한 해석근거가 미제시되었고 변위 등 사용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것 4. 부재설계근거를 제시할 것(기둥, 보 등) - 지붕은 트러스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둥은 단일부재로 검토되어 있어 횡변위 등 구조안정성을 재검토 할 것 5. 적용된 구조기준이 KBC2016으로 되어 있음, KDS 2022 기준 적용, 재검토 바람 6. X2열/Y2열 기둥 기초의 경우 풍하중 부압 조건에 대해 인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확인바람 7. 각 부재별 접합부 설계 근거 작성 바람 8. 구조안전확인서를 재검토바람(글씨가 깨졌음) 9. 설하중 적용시 완경사라면 1KN/㎡ 이상을 고려하기 바람 10. 풍하중 적용시 기본풍속은 지도에 표기하여 정확하게 산정바람 11. 기초검토시 인발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고정단 가정) 소구경 회전식 강관파일로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12. 인발저항에 맞는 기초배근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설명 바람 13. 말뚝의 직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구경 회전식 강관파일의 재원을 보면 좋겠습니다. 기성 제품이라면 지지력에 대한 성과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